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74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김용만 · 박상혁 · 김남근
한창민 · 강준현 · 이정문
김승원 · 문진석 · 천준호
유동수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처 시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유출등의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유출 등의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

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② (생 략)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 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u>지체 없이</u>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 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 ----- ----- ----- ----- <u>즉시</u> ----- ----- ----- ----- ----- ----- <u>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의</u> <u>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u> <u>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